

신청인 정보

이름	김동준
휴대번호	010-6424-8848
전화번호	
전자우편	8848dj@naver.com
주소	

민원 내역

접수번호	20200808900885
진행상황	완료
신청일시	2020-08-08(토) 16:22
제목	오피스텔 가구 방염여부
내용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p> <p>3.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p> <p>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p> <p>저희는 방이동에 오피스텔 공사에 주방, 일반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p> <p>공사를 하며, 각 지역 소방서에 문의결과 가구는 방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관할소방서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p> <p>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등 가구는 방염대상인가요? 아닌가요?</p>

	참고로 질의 회신 내용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방염질의회신.pdf, 수기동 방염 질의회신.pdf, 쌍촌동 가구방염 질의회신.pdf
공개여부	비공개
안전제보여부	미신청
방문상담신청	미신청
처리결과 사진요청	미신청
진행상황알림	홈페이지, 전자우편
답변내용알림	홈페이지, 전자우편
제안변경여부	동의

| 최종답변

답변일시	2020-08-12 18:15
답변내용	<p>김동준 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준 님께서 지난 8월 8일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20200808900885)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김동준 님의 민원내용은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류의 방염대상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0조 제1항 제2호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 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방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p> <p>따라서 문의하신 가구류(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는 방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p>더 궁금하신 점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장보경(02-591-01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장보경 (☎ :02-591-0119 jbk4543@seoul.go.kr)

